

농약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

미등록 농약 사용금지, 인터넷·전화권유·청소년 판매 금지조항 마련

■ 류평열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추진해온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5월 31일에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심의과정에 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등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제도를 마련하고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등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심의의 과정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 가능할 수 있다.

1. 천연식물보호제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천연식물보호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 및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했다.

석회유황합제와 같은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하고 그 제조 및 사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주의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농약사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제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은 천연식물보호제로 농촌진흥청

장이 고시하여 「농약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2. 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개정안은 제조업·수입업·원제업·판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 영업소 폐쇄)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 2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3. 판매관리인의 지정 및 교육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와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라 두어진 관리인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판매관리인으로 인정하고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약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 했다.

또한,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4. 영업 폐업의 신고 및 폐기·반품 등

조치의무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폐기·반품하여야 할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조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농약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이처럼 폐업신고 및 조치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취지는 폐업된 사업장에 농약이 방치될 경우 사람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 미등록 농약 및 원제의 수입·사용·판매 허가 및 농업인들의 미등록 농약 사용 금지

미등록 또는 밀수 농약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땅히 단속할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미등록된 농약 또는 원제라도 시험·학술연구 용인 경우,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경우, 병해충의 긴급 방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7.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안 제17조의4, 제17조의5 신설)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검사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을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4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시험성적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등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8.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청소년에 대한 판매 금지(안 제21조제2항·제3항)

판매업자의 잘못된 농약추천으로 농약 오남용 및 약해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립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 제외),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Y